

# 충남삼성고등학교 생활지도세칙

[시행 2014.3.1.] [2015.08.25.,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충남삼성고등학교 생활지도세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학생 지도 활동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명확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①항 제7호, 제8호의 학교규칙 기재 사항 및 본교의 「학교생활규정」 제52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 제2장 생활 지도 방법

제4조【사안 보고】① 본교의 재학생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최초로 인지한 교직원은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근무 외 시간이나 교외에서 발생한 사안은 비상연락망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보고한다.

③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후보고할 수 있다.

제5조【선제 조치】①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실시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응급 의료 기관에게 신속히 협조를 요청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중대위반사안】① 중대위반사안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폭력
2. 학생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3. 교권 침해
4. 무단 이탈
5. 학습 윤리 위반
6. 기타 중대 사안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각 호별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1]을 참조

② 제1항의 학교 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별도의 규정에 의해 조치한다.

③ 제1항의 내용 중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조치한다.

제7조【기초위반사안】① 기초위반사안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은 경우
2.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3. 면학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타인의 면학을 방해하는 경우
4. 용의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부적절한 방식으로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7. 학생으로서의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경우
8. 기숙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기타 기초위반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각 호별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2]를 참조

- ② 기초위반사안은 지도 교사의 판단에 의해 훈육, 훈계 및 기타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③ 제2항의 조치 외에도 지도 교사는 관찰쪽지를 발급하여 학생의 행동을 기록할 수 있다.

제8조【관찰쪽지】① 기초위반사안을 기록하는 관찰쪽지는 사안에 따라 별점을 기록할 수 있다.

- ② 관찰쪽지의 발급 권한은 교사 및 기숙사 사감에게 있으며, 필요시에는 학교장 승인 하에 일부 학생에게도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학생에게 관찰쪽지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은 관찰쪽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관찰쪽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는 학생생활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별점】① 기초위반사안은 그 경중에 따라 별점을 부가할 수 있으며, [별표2]를 기준으로 하되 지도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점수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별점은 학생별로 누적 관리되며, 학교장의 결정이나 학생자치법정의 판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감되지 않는다.
- ③ 별점은 학기 단위로 관리되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0점이 된다.
- ④ 누적된 별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시행된다.
  1. 10점 이상: 담임교사 및 학부모 통보, 반성문[별표3] 작성
  2. 20점 이상: 담임교사 및 학부모 통보, 학생생활부 선도 프로그램 시행
  3. 30점 이상: 학생자치법정 회부
  4. 40점 이상: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제10조【선도 프로그램】① 학생생활부에서는 학생 지도를 위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선도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생의 특성 및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 ③ 선도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2. 고전 독서 후 독후감 작성
  3. 문학 작품 작성하기
  4. 교내 환경 개선 활동
  5. 기타 학생 선도에 도움이 되는 내용
- ④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참여 태도를 고려하여 일부 별점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학생생활부장이 정한다.

- 제11조【학생자치법정】① 학생들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학생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자치법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생자치법정은 기초위반사안만은 대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학교생활규정」의 학생 징계에 해당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 ③ 학생자치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반드시 긍정적인 성격의 벌이어야 한다.
  - ④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는 것을 거부하고 학생선도위원회로 회부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법정의 판결에 대한 학생의 참여 태도를 고려하여 일부 벌점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학생생활부장이 정한다.
  - ⑥ 구체적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 및 학교장의 방침에 따른다.

- 제12조【학생선도위원회 회부】① 벌점이 40점에 도달한 학생은 바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
- ② 제11조 4항의 학생자치법정을 거부한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한다.
  - ③ 학생선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따른다.

### 제3장 방학 중 생활 지도

- 제13조【운영 원칙】① 방학 중 학생 생활 지도는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② 단, 방학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14조【방학 중 벌점】① 제7조에 의한 벌점 부여는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과 동일하다.
- ② 방학 기간에 받은 벌점은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과 별개로 누적된다.
  - ③ 방학 기간에 누적된 벌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시행된다.
    1. 5점 이상: 학생생활부 선도 프로그램 시행
    2. 10점 이상: 본교에서 실시하는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자격 제한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별표1: 중대위반사안]

구 분	항 목	적 용	비 고
학교 폭력	신체적 폭력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부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부 입력 가능
	성폭력		
	언어 폭력(욕설, 폭언, 인격 모독 등)		
	따돌림		
	사이버 폭력(SNS 이용)		
학생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음주, 흡연	학생선도위원 회 회부	
	절도		
	도박		
	풍기 문란 행위		
	이성 간 혹은 동성 간의 부적절한 스킨십		
	이성의 기숙사 호실에 출입		
교권 침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	학생선도위원 회 회부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무단 이탈	정규 교육 활동 중 무단 이탈	학생선도위원 회 회부	
	기숙사 무단 이탈		
학습 윤리 위반	고사 중 부정행위 혹은 이에 동조	학생선도위원 회 회부	
	표절		
	심각한 수업, 면학 방해 행위		
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학생선도위원 회 회부	
	기타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표2: 기초위반사안]

구 분	번호	항 목	별 점
시간과 장소 지키기	1	등교, 수업, 행사, 면학 등 무단 지각	2
	2	무단 결과	3
	3	무단 결석	5
	4	방과 후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3
	5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출입	2
	6	기타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은 경우	1~3
수업	7	수업 내 지속적인 잡담 및 소음 유발	5
	8	수업 시간에 자는 행위	3
	9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등을 보는 경우	3
	10	적절한 사유 없이 과제를 하지 않은 경우	2
	11	기타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	1~3
면학	12	타인의 면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5
	13	면학 중 잡담 및 소음 유발	3
	14	면학 시간에 자는 행위	1
	15	학습과 관련 없는 서적 등을 보는 경우	1
	16	기타 면학에 방해되는 행위	1~3
용의 복장	17	교복을 입지 않은 경우	3
	18	교복을 입었으나 복장 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	2
	19	두발 규정 위반(피머, 염색)	2
	20	규정에 맞지 않는 화장품 사용	2
	21	규정에 맞지 않는 장신구 착용	2
	22	본인의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1
	23	기타 용의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1~3
공중 도덕	24	낙서 및 기물 훼손	2
	25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2
	26	실내에서 달리거나 위험한 행동	2
	27	실내 소란 행위 및 소음 유발	2
	28	기타 질서를 위반한 경우	1~2
전자기기 이용	29	학교 내부 전산망이나 통신망을 교란하는 행위	3
	30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	2
	31	(통학생의 경우) 부적절한 휴대폰 사용	2
	32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보유	2
	33	태블릿PC를 학습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예절	34	욕설을 하는 경우	3
	35	저속한 언어(비속어, 비방 등)를 사용한 경우	2
	36	교직원, 학부모, 외부 손님에게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기숙사	37	이성의 기숙사 공간에 접근	5
	38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에 출입시킴	3
	39	기숙사 기물을 파손	3
	40	기숙사에 금지물품을 반입	2
	41	기숙사에서 타인의 취침이나 면학을 방해하는 행위	2
	42	기숙사 다른 호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점호 불참	1
	43	기숙사에 부적절한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취식	1
	44	기타 기숙사 규정 위반	1~5
기타	45	학생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1
	46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1~3



[별표4: 학생지도 절차 흐름도]

